

[서식 예] 친권행사정지 사전처분

친권행사정지 사전처분 신청

신 청 인	○ ○ ○ (전화)
	주민등록번호	
	등록기준지	
	주소	
	사건본인과의 관계	
피신청인	□ □ (전화)
	주민등록번호	
	등록기준지	
	주소	
사건본인	ΔΔΔ	
	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	<u>;</u>)
	등록기준지	
	주 소	

청 구 취 지

○○가정법원 2015느합0000호 친권상실신청사건이 청구 사건의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피신청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, 다음의 사람을 그 대행자로 선임한다.

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



청 구 원 인

- 1.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할머니로서, ○○가정법원에 2015느합0000호로 친권상실 사건의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.
- 2. 가.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사건본인인 손자를 키우고 교육을 시키는데 필요한 생활비 등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, 심지어 사건본인을 신청인에게 내버려 둔 채 찾아오지도 않는 실정입니다. 오히려 신청인이 사건본인을 위하여 가입한 보험에서 나온 보험금까지 가로채 간 후 유흥으로 탕진하는 등전혀 사건본인의 양육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.
 - 나. 이에 화가 난 신청인이 사건본인을 피신청인에게 돌려보낸 적이 있는데, 위 피신청인은 자신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지 않고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소재'○○의 집'이라는 고아원에 보내어 버려,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신청인이 위 고아원으로 가서 사건본인을 데려와서 다시 양육을 하게 된 사실도 있었습니다.
 - 다. 또한 사건본인이 20○○. ○. 교통사고를 당하여 ○○병원에 호송되어 친권자의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도, 피신청인은 연락조차 되지 않아 입원 수속 등이 지체되었고, 이후에는 친권자라는 명목으로 위 교통사고로 나온 보험금 및 배상금 ×××만원을 몰래 수령해 가기까지 하였습니다.
 - 라. 피신청인은 자녀인 사건본인의 양육 등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, 오히려 보험금이나 배상금 등을 가로채는 등으로 친권자의 지위에 있음을 악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 - 마. 결국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행위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상실 청구를 하였으나, 위 심판의 효력을 발생하기까지 피신 청인이 친권자의 지위를 계속 악용한다면 사건본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.
 - 바. 위 친권상실신청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피신청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자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습니다.



3. 한편 피신청인이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이 상실될 경우 현재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다음의 사람이 후견인이 되어 그 권리를 행사함이 타당할 것입니다.

다 음

직무대행자 후보자	성명	
	주소	
	주민등록번호	
	직업	
	사건본인과의 관계	

첨부서류

1. 가족관계증명서 (신청인, 사건본인, 대행후보자) 각 1통

2. 주민등록등본 (사건본인) 1통

3. 친권상실신청 사건의 접수증명원 1통

4. 기타 소명자료

2015. O. O.

위 신청인 ○ ○ ○ (인)

ㅇㅇ가정법원 귀중



제출법원	수 소 법 원	신 청 인	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(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, 배우자)	
제출부수	신청서 1부	관련법규	가사소송법 제62조	
불복절차 및 기간	·즉시항고(가사소송법 제62조4항) ·사전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(민사소송법 제444조 1항)			
비 용	・인지액 : 1,000원(☞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) ・송달료 : 당자사수× 000원(1회송달료) ×3회분			
가사사건의 소의 제기,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,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 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,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,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음(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)				